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0.02.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해임 및 충원)

감사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는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

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한다.

제3장 운영

제5조 (위원회)

- ①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
- ②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48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 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 제기 결정여부
- (6)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제청 승인
-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9) 감사인으로부터 보고수령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시정 요구
- (10)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결과,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보고
- (11) 감사계획 및 결과
- (1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에 대한 승인

- (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 (1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6)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7)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1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권한 및 의무

제9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업무감사권
 -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 재산상태 조사권
 - 3. 이사의 업무 보고 수령권
 -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6. 각종 소의 대표권
 -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 8. 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 9.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 10.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
 - 11.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의 수령권
 - 12.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3.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4. 감사록 작성의 의무
5.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제5장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제11조의 (외부감사인의 선정)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갖는다.
- ②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러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이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제9조의 2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동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제13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15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7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의 유형)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정보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21조 (감사의 실시)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④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22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 (문서 등의 열람)

-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 ②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24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25조 (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26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 (규정의 개폐)

-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